

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)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)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」(환경부고시 제2019-75호)는 폐지한다.

별표 / 서식

[별표1]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(제2조 관련)

[별표2]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(제3조 관련)

※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고시란)를 참조바랍니다.

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-10호

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제정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·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1년 1월 26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)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」(환경부고시 제2019-27호)는 폐지한다.

[별표]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(제2조 관련)

순번	살생물물질명	CAS 번호
1	젖산(Lactic acid, C ₃ H ₆ O ₃)	50-21-5
2	아세트산 나트륨(Sodium acetate, C ₂ H ₃ NaO ₂)	127-09-3
3	벤조산 나트륨(Sodium benzoate, C ₇ H ₅ NaO ₂)	532-32-1
4	(+)-타르타르산((+)-Tartaric acid, C ₄ H ₆ O ₆)	87-69-4
5	아세트산(Acetic acid, C ₂ H ₄ O ₂)	64-19-7
6	프로피온산(Propionic acid, C ₃ H ₆ O ₂)	79-09-4
7	아스코르브산(Ascorbic acid, C ₆ H ₈ O ₆)	50-81-7
8	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(Linseed oil)	8001-26-1
9	라벤더 오일(Lavender oil)	8000-28-0
10	페퍼민트 오일(Peppermint oil)	8006-90-4
11	1-옥텐-3-올(1-Octen-3-ol 또는 Oct-1-en-3-ol, C ₈ H ₁₆ O)	3391-86-4
12	옷줍나방 페로몬(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)	
13	이산화탄소(Carbon dioxide, CO ₂)	124-38-9
14	질소(Nitrogen, N ₂)	7727-37-9
15	(Z,E)-테트라데카-9,12-다이에닐 아세테이트 (Z,E)-Tetradeca-9,12-dienyl acetate, C ₁₆ H ₂₈ O ₂)	31654-77-0
16	바큘로바이러스(Baculovirus)	
17	벤토나이트(Bentonite)	1302-78-9
18	시트로넬랄(Citronellal, C ₁₀ H ₁₈ O)	106-23-0
19	황산 철(II)(Iron(II) sulphate)	7720-78-7
		7782-63-0
		13463-43-9

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-11호

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※ 관보 제19921호<2021. 1. 18.)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-9호는 중복 게재되었으므로 취소합니다.

2021년 1월 26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)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,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,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.

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(이하 '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'라 한다)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(화학제품관리시스템(<https://chemp.me.go.kr>))을 말한다)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.